

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6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18일

발 의 자 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남재경, 주찬식, 김영한, 박마루,  
우창윤, 진두생, 김경자(강서),  
김제리, 이석주, 최호정 의원  
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2016.7.7.)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정한 바 있으나, 일부 누락된 사항 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,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벽면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등을 정비하고, 입간판의 표시방법 중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법을 삭제함(안 제2조제3항제1호가목, 안 제4조제1항제3호나목, 안 제7조제5호).
-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

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중에서 허가·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함(제23조제2항2호나목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2조제3항제1호가목 중 “제4조제3항제2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4호·제3항제2호”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“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,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”를 “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,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(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,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0미터 이내)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안 제9조2제1항제3호 중 “한다. 이 경우 입체형·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안 제23조 “광고물등”을 “광고물등(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용 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## 1. ~ 2. (생략)

3.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  
(옥상난간을 포함한다)에는 당해  
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  
고 있는 자의 성명·상호 또는 이  
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 
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 이  
경우 구청장은 「건축법」 제22조  
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 
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,  
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  
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### 가. (생 략)

나. 간판의 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,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#### 4. ~ 9. (생략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—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 
2분의 1 이내, 세로크기는 3미  
터 이하(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 
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, 세  
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 
로써 최대 10미터 이내)-----

#### 4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③ (생략)

제7조(공연간판의 표시방법)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연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광원이

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·전광류와 화면변환·점멸 등  
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의2(입간판의 표시방법)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3.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.2미터 이하, 1면의 면적은 0.6제곱미터 이하, 간판의 합계면적은 1.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체형·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공연간판의 표시방법)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 )

〈 삭제 〉

제9조의2(입간판의 표시방법) ①-----
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한다.

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 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
4. ~ 5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제23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

① (생략)

②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(생략)

2.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(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가.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

나.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

다. ~ 라. (생략)

4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.

1. (현행과 같음)

2. 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.

가. \_\_\_\_\_

나. \_\_\_\_\_  
\_\_\_\_\_.

\_\_\_\_\_ 광고물등(허가·  
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  
한다)

다. ~ 라. (현행과 같음)